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정춘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10439 발의연월일: 2025. 5. 9.

발 의 자:정춘생·김준형·황운하

이해민 · 김선민 · 신장식

서왕진 • 백선희 • 박은정

차규근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대통령이 퇴임 후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 관저에서 퇴거하여야 하나 현행법은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으로 파면된 후 계속 대통령 관저에 머무르는 경우에 대해 따로 규정하지 않음.

이에 파면된 대통령이 관저에 48시간을 초과하여 머무를 경우에 파면부터 퇴거까지의 관저 운영비를 청구하도록 함(안 제10조 신설).

법률 제 호

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0조(파면된 전직대통령의 대통령 관저 퇴거) ①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파면된 전직대통령은 탄핵결정이 있은 날부터 48시간 이 내에 대통령 관저에서 퇴거하여야 한다.

② 전직대통령이 파면 결정이 있은 날부터 48시간을 초과하여 대통령 관저에 머무를 경우, 전직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있은 날부터 퇴거한 날까지의 관저 운영비를 부담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 <신 설></u>	제10조(파면된 전직대통령의 대
	통령 관저 퇴거) ① 헌법재판
	소의 탄핵결정으로 파면된 전
	직대통령은 탄핵결정이 있은
	날부터 48시간 이내에 대통령
	관저에서 퇴거하여야 한다.
	② 전직대통령이 파면 결정이
	있은 날부터 48시간을 초과하
	여 대통령 관저에 머무를 경우,
	전직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있
	은 날부터 퇴거한 날까지의 관
	저 운영비를 부담하여야 한다.